

「2025년 근해어선 추가 자율감척사업」 대상어선 해체처리 과업지시서

I. 과 업 의 개 요

1. 과 업 명 : 2025년 근해어선 추가 자율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용역(2차)

2. 과업의 목적

- 경상북도 근해어선 감척사업으로 발생한 폐업어선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체처리하기 위함.

3. 발주청 및 과업수행자

가. 발주청 :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(해양수산과)

나. 과업수행자 : 조선소, 구조물 철거업체, 폐기물 처리업체, 폐선처리 업체 등
본 용역의 계약상대자(이하“과업수행자”라 한다)

4. 과업의 범위

가. 대상어선은 2025년 경상북도 근해어선 추가 자율감척사업에 따라 “발주청”이
“과업수행자”에게 인수하도록 지시한 어선으로 하며, 사업대상자의
사업 포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(공공용도 재활용 등)로 인하여
인계·인수가 변동될 수 있다.

※ 대상어선(2척) 처리비

(단위 : 원)

선 명	톤 수	선 질	건조년월일	계류장소	금 액	비 고
계	79				77,182,000	
제77일성호	40	FRP	2000-07-01	포항시 구룡포항	38,656,000	근해자망
제132선양호	39	FRP	1995-05-31	포항시 구룡포항	38,526,000	근해채낚기

5. 과업의 내용

경상북도(이하 “발주청”이라 함)가 과업수행자에게 인수토록 지시하는 “어선 및 장비(엔진) 등”(이하 “어선 등”이라 함)의 인수와 “어선(선체) 등을 해체 하여 폐기”(이하 “해체 등 폐기”라 함)하는 과업을 수행한다.

가. 어선 등의 인수 · 인계 · 관리

“과업수행자”는 “해체처리 대상어선”을 대상어선의 선적항 또는 지정된 적법한 장소에서 인수하여 조선소 등으로 이동 후 해체처리하여야 하며, 인수한 때부터 대상어선에 대한 모든 관리의 책임과 이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“과업수행자”가 진다.

나. 해체 등 폐기 처리

“과업수행자”는 매각대상 기관·장비 등을 선체로부터 분리·인수하고, “어선 등”을 “해체 등 폐기”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,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“발주청”에 제출한다.

6. 과업의 기간

가.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까지로 한다.

나. 다만,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또는 기상악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“발주청”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“발주청”의 지시로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하여 과업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II. 과 업 수 행 지 침

1. 과업수행 일반기준

가. 본 과업수행 시 “과업수행자”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,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

나. 과업수행은 관련 법령(해양환경관리법, 폐기물관리법 등)과 규정 및 과업

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“발주청”과 합의하거나 지시를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.

다.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“발주청”이 서류 및 각종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“과업수행자”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“과업수행자”의 부담으로 한다.

라. “과업수행자”는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대상어선별 해체처리비를 산출하여 “발주청”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마. “과업수행자”는 착수계 제출 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내용에 대한 해석을 “발주청”과 “과업수행자”가 상호 달리할 경우 “발주청”의 해석에 따른다.

2. 착수계 제출

가. “과업수행자”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착수계 2부를 제출해야 하며,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과업수행 참여자의 관련 기술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- 1) 예정공정표를 포함한 과업수행 계획서
- 2) 과업수행 참여자 명단 및 보안각서
- 3) 대상어선 해체처리비 내역
- 4) 현장대리인 선임계, 재직증명서
- 5) 사용인감계
- 6) 사업자등록증(사본)
- 7)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

3. 과업수행 관련 인력수급 등

- 가. “발주청”은 “과업수행자”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태만 등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“과업수행자”에게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.
- 나. “과업수행자”는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과업수행 중 인적·물적 피해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, 제반 민·형사·행정상 책임을 진다.
- 다. “과업수행자”는 고용인력의 임금 등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금전 민원에 대한 책임을 “발주청”에 전가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.

4. 계약의 해지

- 가. 과업착수 후 다음 사유 발생 시 “발주청”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때 “과업수행자”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·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1) “발주청”이 지시한 제반사항을 “과업수행자”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
 - 2) “과업수행자”의 과업수행 능력 부족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“발주청”이 판단할 때
 - 3) 기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상 내용을 과업수행자가 위반한 때
- 나. 계약해지의 원인이 “과업수행자”에게 있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과업수행의 지연 등 “발주청”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“과업수행자”는 배상하여야 한다.

5. 대상어선의 인수·인계

- 가. “과업수행자”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어선에 대한 인수·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, 대상어선을 이동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장소와 일정을 “발주청”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나. 대상어선과 감정평가목록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인수하여야 하며, 인수·인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“발주청”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다. “과업수행자”는 사업대상자로부터 “어선 등”을 인수할 때 “별지 제1호” 서식의 인수·인계서를 3부 작성해야 하며, 과업수행자와 사업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토록 조치하고, 1부는 “발주청”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라. “과업수행자”가 해체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“발주청”은 어선 말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, “과업수행자”는 대상어선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(선박등기 등)를 진행하지 않는다.
- 마. “과업수행자”는 해당 선박을 제3자에게 임대, 양도, 용도변경, 소유권 이전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운항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6. 대상어선의 관리

- 가. “과업수행자”는 소유자로부터 “어선 등”을 인수받은 후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“어선 등”의 인수 이후 “해체 등 폐기”하기 전까지 “어선 등”이 훼손되거나 파손, 도난 등의 손실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.
- 나. “과업수행자”는 “어선 등”을 인수받은 후 “해체 등 폐기”하기 전까지 기간 중 발생하는 파손, 도난 등 재산적 손실 및 주변에 해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“어선 등”의 관리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“과업수행자”가 민·형사·행정상 책임을 진다.

다. “과업수행자”는 “별지 제2호” 서식의 어선 등 일일관리 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고, 과업 수행 완료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“발주청”이 관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경우 전화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7. 해체 등 폐기 처리

가. “과업수행자”는 “어선 등”을 인수한 후 즉시 해체처리비 결정서에 명기된 해체기간 이내 “해체 등 폐기”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“발주청”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(“발주청”의 승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상어선의 해체·폐기 처리를 지체한 경우에는 관계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.)

나. “과업수행자”는 “어선 등”의 “해체 등 폐기” 전 반드시 폐선처리번호와 선명이 확인되도록 선체 좌·우에 표시하고, 해체 전 선체 전경, 선수·선미, 조타실, 해체작업 중, 해체완료 후 사진을 구분하여 촬영한 후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다. “과업수행자”는 “해체 등 폐기” 완료 후 “별지 제3호” 서식의 『폐업어선 처리대장』에 기록하고, “별지 제4호” 서식의 『해체·폐기 증명서』에 “별지 제5호” 서식의 『폐업어선 해체 사진첩』 3부를 첨부하여 “발주청”에게 제출해야 한다.

라. “과업수행자”는 “어선 등”을 “해체 등 폐기”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늦어도 5일 전까지 “발주청”에게 통보해야 한다.

마. “과업수행자”는 해양환경관리법,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대상 어선을 적법하게 해체·폐기하여야 한다.

8. 해체 등 폐기 비용 청구

가. “어선 등”의 “해체 등 폐기” 비용은 계약된 금액으로 정한다.

나. “해체 등 폐기” 비용 청구

- 1) “과업수행자”는 “어선 등”의 “해체 등 폐기”를 완료한 후 즉시 “별지 제4호” 서식의 『해체·폐기 증명서』에 “별지 제5호” 서식의 『폐업어선 해체 사진첩 - 해체 전, 중, 후』 3부를 첨부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“발주청”은 “과업수행자”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대해 현장 실사 및 서류 검토를 통하여 준공검사를 하되 본 과업의 내용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준공된 것으로 본다.
- 3)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“과업수행자”는 대금청구서를 “발주청”에 제출하고, “발주청”은 관계 절차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한다.
- 4) “발주청”은 “과업수행자”가 청구한 “해체 등 폐기” 비용의 지급에 앞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시 해체완료 관련자료 및 각종 과업수행에 관하여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보완지시에 따라야 한다.

9. 책임에 관한 사항

- 가.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“과업수행자”의 과실로 발생하는 제3자와의 민·형사·행정적 문제는 “과업수행자”가 책임을 진다.
- 나.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인·허가 등의 조치는 “과업수행자”가 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“과업수행자”가 부담한다.
- 다. “과업수행자”의 중대한 과실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“과업수행자”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.

10. 기타사항

- 가. 본 과업과 관련하여 “발주청”이 지명한 감독관(이하 “감독관”이라 함)은 과업수행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, 필요시 장부 및 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“과업수행자”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- 나. “과업수행자”가 제출하는 제반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며, 과업수행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- 붙임 1. 별지 제1호 서식 : 『인수인계서』
2. 별지 제2호 서식 : 『어선 등 일일관리 기록부』
3. 별지 제3호 서식 : 『폐업어선 처리대장』
4. 별지 제4호 서식 : 『해체·폐기 증명서』
5. 별지 제5호 서식 : 『폐업어선 해체 사진첩』 끝.

인 수 · 인 계 서							
일 시 : 2026년 월 일 시 분							
장 소 :							
어선의 내 역	선 명		호				
	어선번호				진수연월		
	총 톤 수				선체재질	☐ 목선 ☐ FRP ☐ 강선	
	기관의 종류		☐ 육상디젤 ☐ 디젤		기관마력		
기관·장비· 어망·어구 등 ※ 감정평가 목록중 미인수 품목만 기 재	연번	품 목 명	수 량		미인수 사유		비 고
	1						
	2						
	3						
	4						
	5						
	6						
	7						
	8						
	9						
	10						
	11						
	12						
	13						
	14						
	15						
	16						
17							

※ 감정평가목록과 상이하지 않을 시 품목 및 수량칸에 “감정평가 목록과 같음” 기재

인계자(어선소유자) 주소 :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인수자(과업수행자) 주소 :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확인자 소속 주소 :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<별지 제3호 서식>

폐업어선 처리대장

[illegible]

해체 · 폐기 증명서

선 명		어선번호			
선 질		톤 수		기 관	
해 체	기 간				
	장 소				
폐 기	장 소				
	방 법				

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인 위 폐업어선을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·폐기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본 증명서의 내용에 허위 또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민·형사·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, 이 증명서를 제출합니다.

붙임 폐업어선 해체 사진첩 3부.

2026. . .

제출자(과업수행자) 주 소 :

업체명 : 대표자 : (인)

경상북도지사 귀하

폐업어선 해체 사진첩	
해체 전 모습	
어선 전경(측면)	
선수 전경(앞면)	
선미 전경(뒷면)	

※ 첨부요령 : 디지털카메라 촬영 사진 삼입을 원칙으로 함

폐업어선 해체 사진첩

해체 작업 중 및 완료 후 모습

조타실 철거전경
(해체 작업 중)

선체해체 전경
(해체 작업 중)

해체 완료 후
현장 전경

폐업어선 해체 사진첩

기 타 모 습

참 고 1

참 고 2

참 고 3